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5,632,802	18,468,984
일반회계	491,073,009	14,732,190
특별회계	124,559,793	3,736,794
기타특별회계	124,559,793	3,736,7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29,501	315,88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25,153	21,755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44,572	22,33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7,219	4,117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193,415	185,80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383,600	131,50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90,169	38,705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8,240,611	247,21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9,531,052	2,685,932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2,784,501	83,53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8,2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